

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,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(안 제1조~제2조)

연번	조례명	조항	개정내용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	제5조 제2항	· 단서 조항(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) 삭제	자치행정과
2	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5조 제3항	· 단서 조항(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) 삭제	기획예산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가부동수인 경우 안건은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며,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표결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개정은 타당함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